

제5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

◇사료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료수집보존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 증대를 위하여 동협의회의 의장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 등의 차관에서 국회사서관 소속 2·3급 공무원 중 국회사서관장이 지명하는 자 및 국가보훈처 소속 2·3급 공무원 중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는 자 등으로 그 직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5년 1월2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法律 第7352號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

私立學校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간임용된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53조의2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구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3. 2. 27. 2000헌바26)을 함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2005년 1월27일

국무총리 이 해찬

국무위원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法律 第7353號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

教育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에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⑥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 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

<p>다.</p> <p>제32조제3항중 “第73條 내지 第73條의3”을 “제73조 내지 제73조의4”로 한다.</p> <p>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교육감은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p> <p>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의하여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고, 공개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수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p> <p>④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p>	<p>는 지방세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p> <p>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p> <p>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p> <p>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공개전형에 불응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46조중 “第73條의3第2項”을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p> <p>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p> <p>제53조제3항중 “同法 第73條의3第1項”을 “동법 제73조의4제1항”으로 한다.</p>	<p>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부</p> <p>칙</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다.</p>

제2항 내지 제6항 신설)

- (1) 헌법재판소가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 거부 사유 및 그 사전구제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 사후구제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대학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을 통지받은 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학문연구 실적 등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항에 기초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3) 계약제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사전통지 및 사후 불복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기간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11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구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구제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3. 2. 27. 2000헌바26)을 함에 따라 계약제 임용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입학한 자 등에 대하여 졸업 후 당해 지역의 교사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제 임용 대학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 신설(법 제11조의3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월2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法律 第7354號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타 그 意思에 반하는 不利한 處分에 대한 再審을”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 심사”로, “敎員懲戒再審委員會(이하 “再審委員會”라 한다)”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再審委員會”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나. 교사로서 의무복무하기로 추천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법

제32조의2 신설)

(1) 도시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원이 부족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교사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으로 당해 지역의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졸업 후 4년 동안 당해 지역의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교사 임용 후에는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반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

(3)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원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해당지역 초등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13조의 제목중 “敎員懲戒 再審請求”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 再審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제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중 “再審委員會”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再審”을 “소청심사”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기타 그 意思에 반하는”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으로, “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며, 동조동항 후단중 “再審請求人”을 “심사청구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再審委員會”를 “심사위원회”로, “再審請求”를 “소청심사청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再審決定)”을 “(소청심사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再審委員會”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再審請求”를 “소청심사청구”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再審委員會”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再審”을 “소청심사”로, “再審節次”를 “심사절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제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統一教育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라 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된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비급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재심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3. 12. 18. 2002헌바14·32)을 함에 따라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재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 등에 대하여 재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명칭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월2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통일부장관

정 동 영

◎法律 第7355號

統一教育支援法中改正法律